

제18차 전국위원회

- 당헌 개정안 -

2025. 12. 4.(목) 10:00



당헌 개정안

제18차 전국위원회의(2025. 12. 4.)

I. 의결주문

-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II. 의결(안)

- 제9절(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) 신설 및 자구 수정

구 분	주요 내용
제9절 신설	○ 제9절(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) 신설 - 제43조(구성), 제44조(기능), 부칙(효력발생 시기)
자구 수정	○ 제9절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(내용은 현행과 같음) - 기존 당헌 제9절~제18절 → 제10절~제19절 - 기존 당헌 제43조~제101조 → 제45조~제103조

※ 별첨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I. 관련근거

- 당헌 제13조, 제91조

[당헌 제13조(기능)]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2. 당헌의 채택 및 개정

-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.

[당헌 제91조(의결절차)]

- 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제9절(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) 신설

개 정 안

제 9 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

- 제 43 조 (구성)** ① 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·도지사, 자치구·시·군의 장, 시·도의회 의원, 자치구·시·군의회 의원(이하 ‘선출직 공직자’라 한다)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둔다.
- ②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.
- ③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,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
- ④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- 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
제 44 조 (기능)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선출직 공직자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 확정 및 공표
2.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실시
3. 당헌 제75조,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라 구성된 각급 공직후보자추천기구에 선출직 공직자의 현재 임기 중 평가결과 이첩
4. 당무감사위원회에 선출직 공직자 관련 감사 및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, 당무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한 이첩 요구
5. 윤리위원회에 선출직 공직자 관련 표창 및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, 윤리위원회 의결 결과 이첩 요구
6. 기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관련 관리 감독

부 칙 (2025. 12. 4) 이 당헌은 12월 4일 제18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□ 자구 수정

현 행	개 정 안
<u>제9절~제18절</u> (생략)	<u>제10절~제19절</u> (현행과 같음)
<u>제43조~제101조</u> (생략)	<u>제45조~제103조</u> (현행과 같음)